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민사부 공 고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예규(재민 2004-7) 제8조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공고합니다.

- 공고할 사항 -

1. 화해허가결정(덧붙임)

2017. 2. 10.

재판장 판사 이은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10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10가합1604 증권관련집단소송
원 고 주식회사 큐에스아이
(대표당사자)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8길 17
대표이사 이청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주영, 구현주, 송성현
피 고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Royal Bank of Canada)
캐나다 온타리오 토론토 베이 스트리트 200
(200 Bay Street, Toronto, Ontario, Canada)
대표자 사장 고든 엠 닉슨(Gordon M. Nixon)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윤, 박성하
소송복대리인 김수희

주 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604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화해를 허가한다.

이 유

1. 사건의 진행 경과

가. 양일남, 최영미는 2010. 1. 7. 이 사건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1. 2. 10. 양일남, 최영미를 원고 대표당사자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그 후 이 법원은 2012. 5.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기9474 소송허가사건에서 증권관련집단소송 불허가결정을 하였으나, 항고심[서울고등법원 2012라764, 765(병합)], 재항고심[2013마1052, 1053(병합)]을 통하여 파기되었다. 그 후 2015. 11. 16. 항고심[서울고등법원 2015라656, 657(병합)]에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허가하는 것으로 변경되고, 2016. 3. 28. 대법원 2015마2056, 2057(병합)호로 재항고가 기각되어 증권관련집단소송 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양일남, 최영미는 2016. 8. 10. 원고 대표당사자 사임허가를 신청하여 이 법원은 2016. 8. 26. 양일남, 최영미의 대표당사자 사임신청을 허가하였으며, 2016. 10. 27. 주식회사 큐에스아이를 원고 대표당사자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 대표당사자와 피고는 2016. 12. 21. 별지 화해사항과 같은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허가를 신청하였다.

마. 법원은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35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화해허가 신청사실 및 그 내용을 2017. 1. 13.경 인터넷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법원공고란에 공고하고, 확인된 구성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우편으로 발송하여 고지하였으며, 2017. 2. 1.경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지 경향신문에 게재하여 공고하였다.

2. 화해사항에 대한 판단

증권관련집단소송에서 재판상화해는 소송에 직접 참가하지 않은 구성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는바, 공정성, 상당성,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가. 공정성

양당사자는 피고가 지급한 화해금에서 변호사보수를 공제한 금액에 원고가 주장하는 전체 손해액에서 해당 구성원의 손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각 구성원에게 분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는 구성원 상호간 차등 없이 공정하게 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상당성

1) 피고는 원고에게 412명의 구성원 중 제외신고자 및 법원 조정이 성립한 자들을 제외한 총 266명 구성원이 입은 손해액에 관하여 화해금을 지급한다.

2)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은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이 만기 수익금지급조건을 충족시키게 될 경우 상환받았을 금액(투자원금의 122%)과 실제로 상환 받은 금액(투자원금의 약 74.6%)과의 차액이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 위 266명의 구성원들에 대한 합계 금액은 1,697,936,310원이다.

3)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화해금은 위 266명의 구성원들에 대한 위 합계금액 1,697,936,310원의 110%에 해당하는 1,867,729,941원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다. 적정성

재판상화해로 이 사건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킴으로써, 구성원은 주장하는 손해를 온

전하고 신속하게 보전받을 수 있고, 피고는 대외신인도를 고려한 불안정 요인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으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판상화해허가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2. 15.

재판장 판사 이 은 희

 판사 이 봉 락

 판사 김 유 정

별지

화해사항

1. 총원의 범위

한화증권 주식회사가 2008. 4. 25.경 발행한 '한화스마트 주가연계증권(ELS) 제10호 (원금비보장형)'를 매수하였다가 만기에 상환받은 자.

2. 화해의 내용

가. 화해금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화해금액의 총액은 1,867,729,941원으로 한다.

나. 소송비용 및 분배비용

피고는 위 가.항 화해금과는 별도로 원고에게 소송비용 및 분배비용으로 30,000,000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다. 지급방법, 지급기일 및 지연손해금

화해금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화해허가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원고가 정하는 지정계좌에 입금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지급액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라. 화해금의 산정

1) 제외신고자 등의 처리

이 사건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소송허가 단계에서 '한화스마트 주가연계증권(ESL) 제10호(원금비보장형)'를 만기까지 보유한 총원은 412명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

사건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된 날(2016. 3. 18.)로부터 60일(2016. 5. 27.)로 지정된 제외신고 기간 동안, 위 412명의 구성원 중 4명이 제외신고를 하였다.

한편 구성원 중 142명은 이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별도의 공동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16. 11. 30. 조정이 성립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12명의 구성원 중 제외신고자 및 법원 조정이 성립한 자들을 제외한 총 266명 구성원이 입은 손해액에 관하여 화해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2) 손해액의 산정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은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이 만기 수익금지급조건을 충족시키게 될 경우 상환받았을 금액(투자원금의 122%)과 실제로 상환 받은 금액(투자원금의 약 74.6%)과의 차액이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 위 266명의 구성원들에 대한 합계 금액은 1,697,936,310원이다.

3) 화해금의 산정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화해금은 위 266명의 구성원들에 대한 위 합계금액 1,697,936,310원의 110%에 해당하는 1,867,729,941원으로 한다.

3. 분배의 기준 및 방법 등

가. 각 구성원에 대한 지급금액은 피고가 지급한 화해금에서 변호사보수를 공제한 금액에 원고가 주장하는 전체 손해액에서 해당 구성원의 손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나. 다만 변호사보수를 제외한 나머지 소송비용과 분배비용은 화해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지급한 소송비용 및 분배비용 30,000,000원에서 지급하기로 하되, 만

약 그 금액이 3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원고 소송대리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만약 이에 미치지 못하여 잔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55조의 잔여금과 같이 처리하기로 한다.

4. 면책

원고는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전부 포기하고, 나아가 총원에 포함된 각 구성원은 피고 및 관련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과 관련된 향후의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다. 끝.